행 정 명 령 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[붙임]

나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
다. 처분기간 : **'21. 7. 16.(금) 0시 ~ 7. 31.(토) 24시까지**

* 처분 효력발생일 : '21. 7. 16.(수) 0시~

라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*기본방역수칙 준수*

-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
-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-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

  * 영업시간 제한(0시~05시) 및 수용인원 제한($6m^2$→$8m^2$당 1명) 등
- 집회/행사는 100명이상 금지
-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잠정 유보
-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
-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

  * 유흥시설 :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
-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·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

마. 처분사유 : 변이바이러스,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

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사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7월 16일

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지사의인

붙임 **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**

《완화 불가한 조치》

- 사적모임 인원(예방접종완료자 포함)을 8명까지 허용
-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▸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	▸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 ▸ (집회) 100명 이상 금지 ▸ (행사) 100명 이상 금지
② 1그룹 시설	
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▸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클럽, 나이트는 10m²당 1명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(감성주점, 헌팅포차, 단란주점) 춤추기 금지
콜라텍·무도장	▸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(수기명부 불가) ▸ 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
홀덤펍·홀덤게임장	▸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
③ 2그룹 시설	
식당·카페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▸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 ▸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	노래(코인)연습장	▸ **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 간 환기)
	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▸ 공용물품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▸ **수면실 이용금지**
	실내체육시설 (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)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** GX류 운동(그룹댄스운동,스피닝,에어로빅 등),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 등)은 6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없음** 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④ 3그룹 시설		
	학원 등	▸ **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
	영화관·공연장	▸ **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출입자 명부 작성(예매자에 한해 예외) 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**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,000명 이내로 제한**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▸ **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	결혼식장	▸ **웨딩홀별 4㎡당 1명 + 100인 미만** 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
	장례식장	▸ **빈소별 4㎡당 1명 + 100인 미만** 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	이·미용업	▸ **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
	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중·저강도 운동)	▸ **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
	유원시설	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▸ 이용자 간 2m(최소1m)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	오락실·멀티방	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	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**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** ▸ **휴게공간 이용금지** ▸ **집객행사 금지** ▸ **출입자 발열체크**
	PC방	▸ **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** ▸ **운영시간 제한 없음** ▸ 마스크 상시 착용 ▸ 음식 섭취 금지(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*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
⑤ 기타 시설		
	스포츠경기(관람)장	▸ **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30%** ▸ **(실외) 경기장 수용인원의 50%** ▸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 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
	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▸ **수용인원의 30%** ▸ 전자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불가)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	▸ **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50%로 인원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실외체육시설	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가능한 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
	숙박시설	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은 예외)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	* 객실 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▸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▸**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**
파티룸	▸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**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**
도서관	▸**수용인원의 50%**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키즈카페	▸**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
돌잔치전문점	▸**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+ 4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
전시회·박람회	▸**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▸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·시식공간 이용 ▸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
마사지업소, 안마소	▸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
국제회의·학술행사	▸**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** ▸**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** ▸발언자 테이블 칸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
종교시설 방역수칙	
종교시설	▸**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** ▸**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** ▸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*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▸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 ▸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사업장 방역수칙	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	사업장	▸ 300인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: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10%(권고)
	물류센터	▸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
	콜센터	▸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